

# 청약저축 약관

#### 제1조 약관의 적용

- ① 청약저축(이하 '이 저축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 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생계형저축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저축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및 「국고금관리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.

## 제 2 조 거래제한

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합니다. 이 저축의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.

#### 제 3 조 월저축금 입금

예금주는 매월 약정한 날짜에 법령에서 정한 월저축금을 입금해야 합니다.

## 제 4 조 저축기간

이 저축의 저축기간은 가입일부터 국민주택(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)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.

## 제 5 조 지급시기

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.

#### 제6조 이자 등

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#### 제 7 조 법령위반 등

예금주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이 저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는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.

#### 제 8 조 계좌부활

이 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약한 자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경우 등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계좌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9 조 소득공제

이 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제 10 조 양도 및 질권설정

이 저축은 양도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 11 조 기타

이 저축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## 부 칙

청약저축은 2017.1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# 부 칙

청약저축은 2021.3.25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